

의안 번호	제2623호~제2630호
----------	---------------

2025. 6. 16.(월) 10:00
제369회 제1차 정례회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 건 : 8건 (제정조례안 1, 개정조례안 7)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중

목 차

-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장성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장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10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3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새로 개발된 BI 캐릭터의 형태 및 의미를 반영하고, 상징물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장성군의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 브랜드와 BI캐릭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 제작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로 개발된 BI 캐릭터의 형태 및 의미 반영(안 제3조제3호, 별표 3)
- 상징물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와 BI캐릭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및 제공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4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관광과)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장성호 관광지, 금곡영화마을, 물통골 폭포 등 조례에 미반영된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 근거 마련.
-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무단 설치·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의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조례에서 규정 중인 위탁시설 사용료 현행화로 적정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2조)
-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3조)
- 관광지 및 관광시설 관리위탁, 운영지원 등(안 제24조 ~ 제27조)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및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등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무단 설치·방치 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및 위탁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적정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5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바람직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제외대상’ 규정 보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외의 장소에 화장 또는 안치한 경우 지원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제외
- 별지 서식 수정 : 안치장소, 자격확인, 구비서류 목록 정비

4.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화장의 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사설 묘지의 설치 등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자연장지의 조성 등)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장례문화 조성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을 “적법한 장소에 안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별지 서식을 수정·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6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아이돌봄서비스 상위법 개정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본인 부담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수정
 - 다자녀 기준 변경 : 3명 → 2명
(현행)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변경)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 지원 구분 변경 : 7세 이하 → 12세 이하
(현행) 시간제 A형(7세 이하)
(변경) 시간제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 별지 제1호 서식 수정
 - 2025년 정부지원 유형 확대 “마형” 신설 및 구비서류 정비

4. 관련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상위법 개정 및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 → 2명으로 변경하는 등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장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7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 운영기간 변경 : ‘3년 이내’ → ‘5년 이내’
- 주소 오류 변경 : ‘영천로 199-10’ → ‘역전로 199-10’

4.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3년 이내’ → ‘5년 이내’ 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8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및 기타 맞춤법 등 정비

4.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9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환경과)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기존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 등의 책무, 집행계획 수립 · 시행 (안 제5조 ~ 제6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책,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
- 순환경제 통계조사,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0조)
 - 순환자원 사용제품 우선구매,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재정적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안 제11조 ~ 제13조)
 -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 재정적 · 기술적 지원, 군민 교육 및 홍보, 개인 · 단체 및 기관 등 포상에 관한 사항

4. 관련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생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30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체육사업소)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공공 체육시설 추가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신규 추가 (안제3조) (별표1)
 - 국궁장(백학정)이 「홍길동테마파크 조례」(관광과)에서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체육사업소)로 편입
 - 장성호 체육공원 내 신규 체육시설(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 공공체육시설 사용시간(안제11조) (별표2)
 - 장성호 체육공원 시설(야구장 1, 축구장 2) 운영시간 : 08:00~19:00
 -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변경 : 06:00~20:00 → 06:00~20:30
-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안제12조) (별표3)
 - 테니스장 사용료 : (관내 기준) 1인당 사용료 (1,500원)→ 코트당 사용료 (8,000원)
 - 장성호 체육공원 사용료 : (관내기준) 축구장(3시간) 전용 사용료 30,000원
(관내기준) 야구장(2시간) 전용 사용료 40,000원

4.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우리 군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및 운영시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619호
----------	--------

2025. 6. 16.(월) 15:00
제3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 안전 : 1건(제정 조례안 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윤석

목 차

□ 장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19호
- 제출일자 : 2025. 6. 2.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5. 6. 4.

2. 제안이유

- 장성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안 제4조 ~ 제5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교육(안 제6조 ~ 안 제7조)
- 업무협조 및 의뢰(안 제8조)

4.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제10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88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620호 ~ 제2622호
----------	-----------------

2025. 6. 13.(금) 10:00
제3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결위

검 토 보 고 서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4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중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0호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5. 6. 2.
- 회부일자 : 2025. 6.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작성된 2024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742,721,690,830	756,140,916,489	565,422,665,106	190,718,251,383
일반회계	731,228,966,560	744,397,859,643	556,594,865,186	187,802,994,457
특별회계	11,492,724,270	11,743,056,846	8,827,799,920	2,915,256,926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90,718,251,383	38,468,720,050	56,979,245,130	46,090,125,310	6,691,887,664	42,488,273,229
일반회계	187,802,994,457	38,468,720,050	56,979,245,130	46,090,125,310	6,646,550,454	39,618,353,513
특별회계	2,915,256,926	-	-	-	45,337,210	2,869,919,716

나. 기금 결산

○ 2024년말 기금 현재액은 29,95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17,465백만원
- 사 회 복 지 기 금 : 3,418백만원
- 체 육 진 흥 기 금 : 2,848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 1,805백만원
- 식 품 진 흥 기 금 : 88백만원
- 재 난 관 리 기 금 : 3,258백만원
- 고 향 사 랑 기 금 : 1,030백만원
-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 43백만원

다. 채권 결산

○ 2024년말 채권 현재액은 8,52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 반 회 계 : 7,484백만원
- 특 별 회 계 : 1,036백만원

라. 채무 결산

○ 2024년말 채무 현재액은 없음.

마. 공유재산 결산

○ 2024년말 공유(군유)재산 현재액은 1,742,923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토 지 : 164,004천 m² 359,294백만원
- 건 물 : 184천 m² 249,436백만원
- 입 목 죽 : 5,824백만원
- 공 작 물 : 364,779백만원
- 기 계 기 구 : 6,807백만원
- 무 체 재 산 권 : 4,618백만원
- 용 익 물 권 : 399백만원
- 회 원 권 : 246백만원
- 건 설 중 인 재 산 : 751,519백만원

바. 물품 결산

- 2024년말 물품보유 총수는 656개, 7,209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 년 도 말 : 656개 6,574백만원
- 신 규 취 득 등 : 22개 753백만원
- 매 각 등 : 22개 117백만원

사. 재무회계 결산

-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비 고
2024년도	2,962,614	12,546	2,950,068	

- 재정운영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A)	비 용(B)	운영차액(A-B)	비 고
2024년도	554,489	452,962	101,528	

- 순자산변동보고서

(단위 : 백만원)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가	순자산감소	기말순자산
2,858,566	101,527	1,710	11,737	2,950,067

붙임 1. 2024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책

2. 2024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결산 결산서(재무제표, 부속서류 포함) 2책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427억 2천 1백만원, 세입결산액은 7,561억 4천 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5,654억 2천 2백만원, 세계잉여금은 1,907억 1천 8백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함.
- 결산감사위원의 결산감사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로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임.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장성군 결산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함.
- 다만, 결산감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등으로 불용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감액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를 대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채권확보 노력 강화 등 세입·세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자금운영 관리측면에서도 유휴자금 최소화 및 정부의 기준금리안을 적절히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첨부서류 : 생략

2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1호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5. 6. 2.
- 회부일자 : 2025. 6.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3,534,192,000원
- 202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일반회계)

(단위:원)

지출내역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305,311,000	1,815,239,920	284,536,130	205,534,950
재 난	208,354,000	188,101,050	0	20,252,950
긴 급 지 원	1,862,137,000	1,393,113,070	284,536,130	184,487,800
방 역	234,820,000	234,025,800	0	794,200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5.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534백만원임.
- 예비비 지출액은
 - 재 난 : 188백만원
 - 긴 급 지 원 : 1,393백만원
 - 방 역 : 234백만원
 - 총 3개 지출 분야에 1,815백만원으로 적정하게 집행함.

6. 첨부서류 : 생략

3 2024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622호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5. 6. 2.
- 회부일자 : 2025. 6. 1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4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단위: 원)

기 금 명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 성 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43,231,459,191	△13,273,390,028	18,698,861,442	31,972,251,470	29,958,069,16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획 실)	31,459,190,790	△13,994,186,260	17,010,886,110	31,005,072,370	17,465,004,530
식품진흥기금 (일자리경제실)	82,865,694	5,517,210	11,634,360	6,117,150	88,382,904
고향사랑기금 (총무과)	536,100,770	494,519,280	666,335,770	171,816,490	1,030,620,050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3,379,813,264	38,823,390	145,960,390	107,137,000	3,418,636,654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비용지원기금 (환경과)	1,754,394,720	51,155,800	176,155,800	125,000,000	1,805,550,520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과)	3,137,554,238	120,544,760	475,350,170	354,805,410	3,258,098,998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역개발과)	0	43,070,862	160,390,512	117,319,650	43,070,862
체육진흥기금 (체육사업소)	2,881,539,715	△32,835,070	52,148,330	84,983,400	2,848,704,645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5.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3,23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8,699백만원, 지출액은 31,972백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958백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첨부서류 : 생략